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9. 7. .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개정이유

행정규제정비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거나 상위법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오수정화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의 정기점검을 시설용량에 따라 년 1회 내지 4회에 걸쳐 기술관리대행자, 기술관리인등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6조).
-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5항의 분뇨관련영업허가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고 있는 분뇨관련영업허가 제한 규정이 상위법률에 위배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 다.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인 배출부과금, 과징금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등 관련 과태료 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함 (안 제17조, 별표 3, 별표 4).
- 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자의 책무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2조 내지 제38조, 제41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 마.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과 중복하여 규제하거나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4조, 제8조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제4조를 삭제한다.

“제2장 오수 및 분뇨의 처리”를 삭제한다.

제6조, 제8조제3항, 제13조, 제14조를 삭제한다.

“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를 삭제한다.

제22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의 “1.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하고, 동표 4의 1.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중 제6호란을 삭제하며, 제8호본문 “영업구역, 기한 및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법 제35조제4항)”를 “허가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고 동호가목을 삭제하며, 동표 4의 “2. 과태료 부과기준(제37조 관련) 및 내용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칙			<삭제>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삭제>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			
	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			
	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			
	수의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자치단체, 법인 및 개			
	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가이축산폐수정화조”라 함은 법 제			
	2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허가 및 신고대상을			
	제외한 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			
	설을 말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삭제>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장 오수 및 분뇨의 처리			<삭제>
제6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 ①법 제14	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
	오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일 처리 용량 200킬로리터이상의			
	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2. 1일 처리 용량 200킬로리터미만 100			
	킬로리터이상의 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현행	개정안
<p>3. 1일 처리 용량 100킬로리터미만은 년 1회 이상</p> <p>②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 실시 결과를 점검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등의 기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관리대행자 2.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p>④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수리, 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규격, 기계설비 등의 정화기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에 신고 하여야 한다.</p> <p>⑤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한 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개축으로 인하여 유입수의 성상 또는 유입량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8조 (분뇨의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징수등) ① ~ ②(생략)</p> <p>③분뇨를 배출하는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전 소유자가 미납한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p>	<p>제8조 (분뇨의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징수등) ① ~ ②(현행과 같음) <삭제></p>

현행	개정안
<p>④(생략)</p> <p>제13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대책) ①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대행구역 및 청소 추정 물량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운반 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 등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및 조치 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14조 (정화조 등의 청소) ①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청소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이행 명령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③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유효 용량별 저류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수시로 오니저류조의 최종 오니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오수정화시설로서 각 조의 오니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 등을 제거한 후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3.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스컴, 침전오니 및 찌꺼기등(오니 제거 시에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을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p>④정화조 등을 청소한 자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가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의 여부를 청소완료후 30일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 3 장 축산폐수의 처리</p> <p>제16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 ①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p>	<p><삭제></p> <p><삭제></p>

현행	개정안
<p>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p> <p>1. 정기 점검</p> <p>가. <u>측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측산폐수정화시설은 월 1회이상</u></p> <p>나. <u>측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측산폐수정화시설은 6월마다 1회이상</u></p> <p>2. 방류수의 수질 측정</p> <p>가. <u>측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측산폐수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u></p> <p>나. <u>측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측산폐수정화시설은 6월마다 1회상</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산폐수정화시설의 점검 및 수질 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제1항제1호의 정기점검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자 또는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기준에 적합한 자</u></p> <p>2. <u>제1항제2호의 방류수의 수질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u></p> <p>제17조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 기준) 법 제29조, 법 제37조제2항 및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 기준은 별표3,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4와 같다.</p>	<p>제17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현행	개정안
<p>제18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고)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축산시설 중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 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은 규정에 의거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 4 장 분뇨와 관련된 영업 허가 등</p>	<p><삭제></p>
<p>제19조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자로 하며,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구역, 영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p> <p>③분뇨관련 영업을 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 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처리능력 및 청소능력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시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20조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등록 또는 허가 요건의 구비 실태2.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3.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실태4. 기타 관계 법규에서 정한 준수 사항 등의 이행 여부	<p><삭제></p>
<p>제21조 (처리실적보고)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5 장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p>	<p><삭제></p>
<p>제22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 (이하“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23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p><삭제></p>

현행	개정안
<p>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p> <p>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p> <p>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p> <p>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p> <p>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p> <p>7.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p> <p>8.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p> <p>9.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p> <p>10. 기타 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p>	
<p>제24조 (설치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것. 다만, 설치 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일 것</p> <p>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 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 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변기 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p> <p>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표지를 부착할 것</p> <p>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 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p>	
<p>제25조 (기타시설)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제24조의 규정된 시설 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 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할 수 있다.</p>	<p><삭제></p>
<p>제26조 (위탁관리) ①시장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7조 (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2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p><삭제></p>
<p>제29조 (유지·관리 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p><삭제></p>

현행	개정안
<p>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 1회 이상 도색할 것</p>	
<p>제3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31조 (화장실의 개방)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p> <p>④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삭제></p>
<p>제32조 (시설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24조,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2회(상·하반기) 정기</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3조 (개선명령)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24조, 제27조 내지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삭제></p>
<p>제34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시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 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을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35조 (유료화장실의 승인) ①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p>	<p><삭제></p>

현행	개정안
<p><u>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 내의 화장실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u></p> <p>1. <u>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u></p> <p>2. <u>전담관리인을 둘 것</u></p> <p>3. <u>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u></p> <p>②<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u></p> <p>③<u>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u></p>	
<p><u>제36조 (준수사항)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1. <u>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u></p> <p>2. <u>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u></p> <p>3. <u>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u></p> <p>4. <u>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u></p>	<p><삭제></p>
<p><u>제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시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36조의 규</u></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정에 의한 개선 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6 장 보 칙</p>	<p><삭제></p>
<p>제38조 (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13조에 의한 대행업자가 시설 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41조 (준용규정) 수수료,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의 부과 및 징수 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41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현행	개정안
[별표 3]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 기준 (내용생략)	<삭제>
[별표 4] 1.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내용별첨) 2. 과태료 부과기준(제37조 관련) (내용생략)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별첨) <삭제>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관리카드 (서식생략)	<삭제>
[별지 제2호서식] 공중화장실개선명령서 (서식생략)	<삭제>
[별지 제3호서식] 공중화장실개선명령이행서 (서식생략)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유료화장실승인신청서 (서식생략)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유료화장실승인서 (서식생략)	<삭제>

[별표 4]

(현 행)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단위: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1항)	500	700	1,000
7. (생			략)
8. 영업구역, 기한 및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법 제35조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나. (생	500	700	1,000 략)
9. (생			략)
10. (생			략)
11. (생			략)
12. (생			략)
13. (생			략)
14. (생			략)
15. (생			략)

(개 정 안)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현 행 과	같		음)
2. (현 행 과	같		음)
3. (현 행 과	같		음)
4. (현 행 과	같		음)
5. (현 행 과	같		음)
<삭			제>
7. (현 행 과	같		음)
8. 허가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 가. <삭			제>
나. (현 행 과	같		음)
9. (현 행 과	같		음)
10. (현 행 과	같		음)
11. (현 행 과	같		음)
12. (현 행 과	같		음)
13. (현 행 과	같		음)
14. (현 행 과	같		음)
15. (현 행 과	같		음)